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905 발의연월일: 2025. 3. 13.

발 의 자:서영석·남인순·이건태

김선민 · 서미화 · 안태준

강준현 • 위성락 • 김재원

박민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 중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각각 12.4%와 8.9%로,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인 4.7%와 5.7% 대비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.

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장애인 본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, 그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에게도부담으로 작용하는바,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을 추가하고,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(안 제3조 등).

법률 제 호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 중 "영양개선"을 "정신건강, 영양개선"으로 하고, 같은 조제4호 중 "건강증진사업"을 "심리치료 및 상담, 건강증진사업"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복 지센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간의 연계체계의 구축 제2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해당 지역의 장애인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건강권"이란 질병 예방, 치	2
료 및 재활, <u>영양개선</u> , 재활운	<u>정신건강, 영</u>
동,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	<u>양개선</u>
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	
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	
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,	
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	
을 권리를 포함한다.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"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"	4
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	
진, 주기별 질환관리, 진료 및	
재활, <u>건강증진사업</u> 등 장애	<u>심리치료 및 상담, 건</u>
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	<u> 강증진사업</u>
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.	
5. · 6. (생 략)	5.・6.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)	제19조(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)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	①
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	
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	

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시설, 인력,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 는 기관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4. ~ 11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0조(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)

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 사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 다)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·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 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
와 정신건강복지센터(「정신
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
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
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
한다. 이하 같다)간의 연계체
계의 구축
4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)
①
·

 1. · 2. (생 략)
 1. · 2. (현행과 같음)

 <신 설>
 2의2. 해당 지역의 장애인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

 3. ~ 5. (생 략)
 3. ~ 5. (현행과 같음)

 ② (생 략)
 ② (현행과 같음)